대학원 심리학과(기초심리학 및 응용심리학전공)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제정 2013. 03. 01. 1차 개정 2014. 11. 07. 2차 개정 2016. 03. 21.

- 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심리학과(이하 "학과"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**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1절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

- 제3조(제출자격시험) ①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(이하 "자격시험"이라 한다)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.
 - ② 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.
 - 1. 석사학위과정 : 수료학점의 2/3 (16학점)이상을 기 취득한 자
 - 2. 박사학위과정 : 수료학점의 2/3 (24학점)이상을 기 취득한 자
- 제4조(응시절차) 학위청구논문(이하 "논문"이라 한다)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시험과목) 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전공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.
 - ② 자격시험의 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하되,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, 박사학위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하며, 기초 심리학 전공의경우 응용 심리학 교과목 1과목 및 심리학 연구방법론 교과목(심리 측정학,심리학사 및 체계,고급심리통계,실험설계법 I, 상관과 회귀분석,실험설계법 Ⅱ, 중다변인분석법,연구논문지도,고급심리통계세미나,심리학 교수원리와방법) 1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며,응용 심리학 전공의 경우 기초 심리학 교과

목 1과목 및 심리학 연구방법론 교과목 1과목을 반드시 포함한다.

- ③ (삭제 2016.03.21.)
- ④ 시험의 결과는 1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시험출제기준)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- 제7조(출제위원 및 채점위원) ①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한다.
 - ②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제8조(합격기준) ①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 - ② (삭제 2016.03.21.)
 - ③ 불합격된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.
- 제9조(보고) 계열학사위원장은 자격시험의 합격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절 학위청구논문의 작성 및 제출

- 제10조(논문의 작성)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영어·독일어· 프랑스어·중국어·일본어 중 1종의 외국어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 - ② 논문의 작성요령은 따로 정한다.
- 제10조의 1(논문지도위원회)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 위원회를 둔다. (신설 2014.11.07.)
 -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,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(신설 2014.11.07.)
 -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 (신설 2014.11.07.)
 -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

- 논문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,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. (신설 2014.11.07.)
- ⑤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계획이 통과된 학생은 "논문계획승인서"를 논문접수 시함께 제출한다. (신설 2014.11.07.)
- 제11조(논문제출자격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논문 제출기간)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, 박사학위청구 논문은 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대학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 - ② 의무군복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제13조(논문 제출 및 접수) ① 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은 3부를, 박사학위청구논문은 5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및 계열학사위 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③ 대학원장은 논문의 접수가 부결되었을 때에는 제출서류와 함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논문심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14조(논문심사료)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외국어능력 기준)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 (신설 2014.11.07.)
 - 1. TOEIC 700점 이상 (개정 2016.03.21.)
 - 2. TOEIC-S 6(130~150)젂 이상 (신설 2016.03.21.)
 - 3. TOEFL(CBT) 200점 이상 (신설 2016.03.21.)
 - 4. TOEFL(PBT) 530점 이상 (신설 2016.03.21.)
 - 5. TOEFL(iBT) 82점 이상 (개정 2016.03.21.)

- 6. TEPS 590점 이상 (개정 2016.03.21.)
- 7. 국제언어교육센터 영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(신설 2016.03.21.)
- ② 본교 심리학과 석사과정(기초심리학 및 응용심리학 전공)에서 외국어능력기 준을 충족하여 동일학과, 동일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(신설 2016.03.21.)
- **제16조**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 ① 박사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전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해야 한다.
 - 1. 주저자만 인정한다.
 - 2. 국내전문학술지(등재) 2편 이상 게재해야 하며, 박사학위 청구논문과 관련 되어 있어야 한다. 박사학위청구논문과의 관련성 여부의 판단은 "지도교수"에 위임한다.
 - 3.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 단, 최종학위논문 제출일 전 게재될 경우에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.
 - 4.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별표와 같이 실적으로 인정한다.
 - 5.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 과정에서 게재한 실적만 인정한다.
- 제17조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10조의 1과 제16조는 2013년 이전의 입학생 모두에게 소급적용한다.

부 칙 (2014.11.07.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 단, 제16조는 2015년도 이전 입학생 모두에게 소급적용한다.

부 칙 (2016.03.21.)

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